

##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상호(명 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(사업장 소재지) (전화번호: )	
해당생물 (약기재료) 명세	보통명	학명
	생물 원산지	약기 생산지
	협약 적용시점	해당 부속서 [ ] I급 [ ] II급 [ ] III급
해당 약기 명세	약기의 종류	제작사
	획득한 지역	
	입수 시기	
	입수 경위	
	명세(일련번호 등 약기 식별을 위한 세부 특징)	
기타	인증서 발급 후 사용계획(개인적 이용, 유·무료 공연, 전시 등)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### 환경부장관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1. 해당 약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약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약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.6센티미터, 세로 10.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약기 사진 1장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

#### 처리절차

